

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4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5. 28.

제 출 자 : 송 파 구 청 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
다.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계획의 수립, 구매 촉진 (안 제5조~제7조)

라. 홍보 및 표창(안 제8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사전협의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분석평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26. 4. 16. ~ 2026. 5. 6. (20일간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제정문안, 관계법규,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별첨

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청,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
2.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

3.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

제6조(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(이하 “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
- 2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
- 3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우선구매 촉진 등)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, 공공단체, 체육시설,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, 단체·법인 등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

로 구매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1.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
2.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
2.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

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

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

-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
(보건복지부 고시)

제2조(구매목표 비율)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.1로 한다.

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해당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·감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- 작성자 : 주 무 관 행정9급 박은진
- 검토자 : 장애인정책팀장 행정6급 윤미정
- 결재자 : 장애인복지과장 사회5급 안현주